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김 대 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I. 서론

지방자치가 성숙함에 따라 지방재정도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세제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성 부족,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개선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라는 개선과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수 기반확충 방안의 하나로 자주 논의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세수구조, 자치단체간 세수분포, 지방세입구조 등 지방세제·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세제·재정의 숙원 과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우선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를 개선하여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지방간 세수불균형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지방세수 기반을 확충하여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학자,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지방소비세제를 설계하여 도입하면, 지방세제·재정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세 도입에 대하여 논의만 무성할 뿐, 실제로 도입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지방세제와 재정이 상호 연관성이 깊으며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소비세 도입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의식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 장에서는 지방세제·재정 현황과 이들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 III 장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세원의 선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방세제·재정의 제약조건하에서 바람직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 IV 장에서는 검토된 방안이 지방세제·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제 V 은 본 연구의 결론부분이다.

II. 지방세제·재정 현황

1.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

현행 지방세제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 구조이다¹⁾. 현행 16개 지방세목을 세원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 재산과세에는 6개 세목이 있는데 이 중 보유과세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4개 세목이 있으며, 거래과세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2개 세목이 있다. 그리고 소득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는 주민세, 농업소득세 2개 세목이 있으며, 소비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4개 세목이 있다. 그리고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4개 세목은 과세대상이 혼합되어 있어 기타로 분류한다.

〈표 1〉 지방세목의 세원별 분류

세원별	세 목	
재 산	보유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과 세	거래과세	취득세, 등록세
·소득과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소비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기타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계		16개 세목

2006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의 세수구조를 살펴보면, 재산과세가 22조 9,959억 72백만원으로 55.7%를 차지하며, 소득과세가 6조 2,147억 69백만원으로 15.1%를 차지한다. 그리고 소비과세는 6조 1,493억 84백만원으로 1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과세위주의 지방세수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재산과세는 세수의 소득·소비탄력성이 낮아 국가 경제성장이나 지역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소비의 증가가 직접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세수신장성이 낮다²⁾. 둘째, 부동산 거래과세 위주의 우리나라 지방세제는 부동산 경기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97년의 경제위기때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셋째, 재산보유과세인 재산세 등은 일정한 납기에 전국적으로 징수되며, 과표산정을 위해서 재산가액평가라는 행정과정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세수확충이 어렵다. 따라서 현행 재산과세위주의 지방세제가 안고 있는 문

- 1)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성 부족은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동일한 문제점을 다른 시각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최근에는 2005년의 재산세제 개혁으로 과표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2006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과세의 성장률이 소득·소비과세의 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표적용비율의 상향 조정과정이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재산과세의 상승률은 다시 소득·소비과세에 상승률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 기반확충은 재산과세가 아닌 소득과세나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2〉 지방세수 구조

(단위: 백만원, %)

구분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기타	합계
세수	22,995,972	6,214,769	6,149,384	5,933,577	41,293,702
비중	55.7	15.1	14.9	14.4	100.0

2.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지방세제의 또 다른 문제점인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006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 총액은 41조 2,937억 2백만원인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지방세수는 23조 9,723억 48백만원으로 58.1%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부하여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는 이들 수도권 3대 시도에 지방세수가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부산 등 광역시를 합친 대도시권 광역시도의 지방세수는 31조 1,210억 43백만원으로 75.4%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세수의 수도권 나아가 대도시권에의 집중은 현행 지방세제의 큰 문제점이지만, 거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표 3〉 지방세수 구조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수	비중	구분	세수	비중	구분	세수	비중
서울	11,306,413	27.4	울산	943,585	2.3	전남	1,060,644	2.6
부산	2,579,279	6.2	경기	10,720,678	26.0	경북	1,798,727	4.4
대구	1,659,771	4.0	강원	1,055,398	2.6	경남	2,316,613	5.6
인천	1,945,257	4.7	충북	1,041,159	2.5	제주	433,744	1.1
광주	885,554	2.1	충남	1,551,017	3.8			
대전	1,080,507	2.6	전북	915,356	2.2	합계	41,293,702	100.0

주: 2006년 결산 순계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07.

3.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

한국의 지방재정에서 가장 자주 문제로 제시되는 것이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이다. 지방세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결산 순계기준으로 지방세입 총액은 123조 9,752억 15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41조 2,937억 2백만원(33.3), 세외수입이 30조 1,991억 22백만원(24.4%로 자주재원비율은 57.7%이다. 그리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1조 7,346억 82백만원(17.5%), 국고보조금이 28조 9,509억 61백만원(23.4%)이다. 이러한 지방세입구조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표 4〉 지방세입구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123,975,215	41,293,702	30,199,122	21,734,682	28,950,961	1,796,748
100.0	33.3	24.4	17.5	23.3	1.4

주: 2006년 결산순계기준(지방재정연감의 결산총계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7.

지금까지 지방세제·재정의 고질적 문제점인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3가지 문제점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부터 거론되던 것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3가지 문제가 상호 연계가 깊어서 개별적으로는 방안을 모색해서는 해결되지 않으며, 동시에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의식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과세의 확충이 필요한데, 소득·소비세원은 주로 국세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소득·소비 관련 세원이양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방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앙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세원이 풍부한 불교부단체에게 추가로 세원이 이양되기 때문에 세원 이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세원이양으로 감소되는 국가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재원이 감소가 필요한데, 이전재원 감소는 지방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같이 지방세제·재정은 상호 연관성이 깊고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 문제의 해결이 다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지방세제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국세제도도 포함시켜 동시에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Ⅲ. 지방소비세 도입 논의

1. 세원의 선택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구조를 개선하려면 지방소득과세나 지방소비과세가 확충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비과세인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대안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면 세원의 선택과 세수의 귀속, 과세권의 결정 등이 우선적으로 논

의되어야 한다. 우선 지방소비세원으로 적합한 세원의 선택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방소비세가 명실상부한 지방세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원배분방식의 선택이 필요하다³⁾. 그동안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세원배분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크게 독립방식에 속하는 방안과 분여방식에 속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립방식에 속하는 방안으로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일부 부가가치세원(음식업 등)의 지방이양 등이 있고, 분여방식에 속하는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교통세의 공동세원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표 5〉 지방소비세 관련 기존 논의

구분	내 용
김정훈 (1996)	음식, 숙박, 운수창고통신,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화
김대영 (2000,03)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원화
오연천 (2000)	교통세의 공동세원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세원화
곽채기 (2000)	부가가치세(음식업, 숙박업), 특별소비세(특정한 장소의 출입)의 일부 세원을 분리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
원윤희 (2001)	담배소비세의 증가세화 마권세의 국세이양, 입장세의 지방세화
이영희 (2001)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의 일부 세원공유
최명근 (2001)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도축세, 면허세, 입장세를 포함하여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
이삼주 (2002)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천명철 (2006)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유태현·한재명 (2007)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세수분리방식 중 독립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3) 국세·지방세의 세원배분 유형은 과세권과 세수가 국세와 분리되어 있는 「세수분리방식」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세수분배방식」의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수분리방식은 또한 독립세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독립방식과 부가세와 같이 국세에 중복하여 과세하는 중복방식으로 분리된다. 세수분배방식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설정하고 그 세수를 양자가 나누는 공동방식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느 쪽의 일방이 과세권을 가지고 세수를 나누는 이양방식이 있다. 이 중에 공동방식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과세에 대하여 결정하는 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양방식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그 세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분여방식(分與方式)이다. 또 하나는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그 세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에 이양하는 분부방식(分賦方式)이다.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세원분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국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비세원은 거의 없다. 특히,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로서 거의 대부분의 소비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소비세원을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포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비세원을 포착한다고 하여도 그 세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분리방식 중 중복방식은 현행 조세제도상 채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의 소비세원에 대하여 지방이 독자적으로 중복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세율로 지방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생산지 원칙으로 징수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제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복과세의 허용은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한 각 지역의 세율인상 경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복방식의 채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수분배방식 중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과세권을 설정하고 그 세수를 양자가 나누는 공동방식은 과세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기관에서 조세를 과세하고 있는 현상하에서 굳이 지방소비세의 과세를 위하여 별도의 행정기관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세수분배방식에서는 이양방식 중 분여방식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분여방식에 속하는 대안으로서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방안과 교통세의 공동세원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교통세의 공동세원화는 이미 국세인 교통세가 지방세의 주행세와 공동세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제도로써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즉, 교통세와 공동세원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이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 배분비율의 문제이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교통세는 유통소비에만 국한되어 징수되는 세금으로 이는 지방의 소비중대가 지방세수의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로서 지방소비세의 의의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비해 다소 열위에 있다. 그리고 수입품인 유류는 가격변화가 심하므로 세수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소비세원에 대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비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세수확충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수의 충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면, 지방소비세의 형태는 부가가치세원을 국가와 지방의 공동세원으로 하는 분여방식의 지방소비세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세수의 귀속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하여 분여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지방소비세수의 귀속지 결정이다.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생산지원칙을 적용하여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으로 부가가치가 생산된 지역에서 징수하므로 부가가

치세의 징수지와 최종부담자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지방 소비세수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지방 소비세가 최종소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부가가치의 생산과정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지방소비세가 소비과세로서의 성격을 보유하려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지방세수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귀속되는 소비지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지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지방소비세수는 세를 부담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귀속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지역별 최종 소비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생산되어, 소비되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의 생산이나 소비, 특히 최종소비를 정확히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최종 소비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대응변수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소비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소비세에서 「소비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거주지역에 그들이 부담한 지방소비세수를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소비지표」로 다양한 지표가 검토되고 제시되었지만, 이들 중에서 지방소비세의 지표로서 바람직한 것은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과 최종소비지출(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이나 최종소비지출(민간)은 그 지역의 소비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소비세수 귀속의 소비지원칙에 적합하다.

둘째,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이들 자료를 집계하고 있으므로 사용이 용이하다. 이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도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 세무행정비용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과 최종소비지출(민간)은 광역자치단체별 분포는 집중도가 현행 지방세수 분포보다 낮다. 광역자치단체별 집중도가 현행 지방세보다 낮다는 사실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을 때 지방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광역자치단체별 세수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이 도입 반대논리로 거론되었지만, 실제 분석결과를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3. 과세권의 결정

부가가치세를 중앙과 지방의 공동세원으로 하여 지방세목을 신설하는 형태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은 결정되었다.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어느 쪽이 지방소비세의 과세권을 갖느냐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지방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세(시도세)로 하느냐 기초자치단체세(시군구세)로 하느냐를 논의하기로 한다. 이 논의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양될 기능의 성격과 규모에 초점이 맞추어 진

다. 중앙으로부터 이양되는 기능이 주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된다면, 이에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를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기능이양이 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되든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 이양되더라도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 재위임될 성격의 기능이라면 지방소비세는 시군구세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양될 기능의 성격과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또한 중앙 기능의 지방이양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의 계층에만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기초 양계층에 모두에게 발생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입 확충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소비세가 어떤 형태로 도입되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재원의 일부가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된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재원이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역으로 시군구세로 도입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재원이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원이전은 상위 행정계층에서 하위 행정계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소비지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수를 귀속시킨다면, 시군구세 형태의 지방소비세도입은 어렵다. 왜냐하면, 현행 우리나라 통계제도하에서 소비관련 통계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집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구를 「소비지표」로 선정하는 경우 외에는 시군구세 형태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세로 도입하고, 광역·기초간 기능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살펴본 세원의 선택, 세수의 귀속, 과세권의 결정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원의 선택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세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가 공유하는 방안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둘째, 세수의 귀속은 국세는 부가가치세가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소비지원칙에 따라 세부담자의 거주지와 세수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비지표에 의하여 배분한다.

셋째, 과세권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과세권은 광역자치단체가 갖는 시도세로 도입한다.

4. 중앙·지방간 재원 중립

지금까지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세원의 선택, 세수의 귀속, 과세권의 결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소비세 도입 논의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에서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중앙정부에서도 국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면 이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와의 공동세 방식으로서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국가 세원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가 세원이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중앙정부가

재원의 손실을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이양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러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소비세 형태로 이양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와 지방간 업무 배분에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세원의 이양은 이에 상응하는 이전재원의 감소를 수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주 주장이 되었다. 셋째, 이전재원의 감소없이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새로운 세원이 이양되려면, 지방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방세원이 국가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들 3가지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대상으로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 어떠한 기능이 이양되며, 소요 자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구체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이나 교육자치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을 논의하려면, 자치경찰 등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세원인 부가가치세를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재원을 감소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이 방안은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부한 서울 등 불교부단체에 세원이 이양되고 동시에 교부단체에 이전되어야 할 이전재원이 감소해야 한다. 둘째, 지방세원인 부가가치세를 어느 소비지표를 사용하여 배분하든 서울 등 대도시권에 이양되는 규모가 크므로 지방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현재의 지방재정·세제 상황하에서는 부가가치세원의 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에 상응하는 지방세원을 국가로의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와 지방간에 세원을 교환하는 형태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중앙과 지방간에 세원을 교환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어느 쪽도 세수의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방안으로 기존의 일방적인 세원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보다 중앙의 동의를 얻기 용이하다.

이와같이 중앙·지방간 자원 중립을 유지하며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하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원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중앙에서 이양되는 규모에 상응하는 규모의 지방세원 또는 재원을 중앙으로 이양한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원의 교환으로 인하여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시도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세원교환시 발생하는 세수의 불일치는 이전재원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도입 방향하에서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시도로 이양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시도세의 중앙이양이 필요하다. 중앙으로 이양이 가능한 시도세로는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가 검토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레저세와 면허세는 세수규모가 적어 이를 교환대상으로 할 경우 지방소비세는 규모가 적어 자원조달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교환대상 시도세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검토될 수 있는데, 국가사무인 등기·등록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등록세가 취득세보다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시도세로 도입하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규모에 상응하도록 지방세원인 등록세를 국가로 이전한다.

둘째, 지방소비세수의 귀속은 소비지 원칙에 따라 세부담자의 거주지와 세수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비지표에 의하여 배분하되 소비지표로는 최종소비지출(가계)을 사용한다.

셋째, 지방소비세의 세수규모는 등록세의 중앙으로의 이전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하며, 개별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감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넷째, 중앙·지방간 세원조정은 재원중립을 전제로 하므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중앙의 세수감소는 이전재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IV. 지방세제·재정 파급효과

1. 지방세수 확충효과

부가가치세를 공유세원으로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하되, 어느 시도도 지방세수 감소가 없도록 하여 시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즉,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어느 시도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세와 지방소비세 간 세수 격차가 가장 큰 경기도의 세수 감소를 0으로 놓고 세원 교환을 추진한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수 규모는 10조 5,789억 36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방소비세수 규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 것이다. 등록세 비중과 지방소비지출 비중을 비교할 때, 가장 차이가 큰 곳은 경기이다. 경기의 등록세 비중은 29.0%인데, 최종 소비지출(가계)의 비중은 21.8%이다. 따라서 세목교환으로 경기도에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방소비세 규모는 10조 5789억 36백만원이 될 것이다⁴⁾. 이러한 규모로 부가가치세를 이양받아 최종소비지출(가계)을 소비지표로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을 경우의 지방세수는 2조 6,294억 12백만원이 증가하는 데 이는 지방소비세도입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부가가치세수 10조 5,789억 36백만원과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양되는 등록세수 7조 9,495억 23백만원과의 차이이다. 이와같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는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을 축소시켜 중앙·지방간 재원중립을 유지하도록 한다⁵⁾. 즉, 이전재원 중 국고보조금을 시도별로 지방비 부담률을 높혀 2조 6,294억 12백만원 감소시키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세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전재원이 감소하여 중앙·지방간의 재원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4) 지방소비세 규모의 추정은 경기도의 등록세수를 경기도의 최종소비지출(가계)이 전체 시도의 최종소비지출(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구했음(2조 3,062억 8백만원/0.218= 10조 5,789억 36백만원).

5) 축소할 이전재원으로 국고보조금 대신 보통교부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모두 일반재원이므로 중앙·지방간 재원 이전도 일반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의 감소는 교부단체인 시군에의 재원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여, 전 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대신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지방소비세를 도입의 시도별 세수증감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수는 2조 6,294억 12백만원이 증가하는데, 이는 지방세수의 6.4%, 시도세수의 8.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시도별로 지방세수 증가효과를 살펴보면,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의 지방세수는 증가한다. 가장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큰 시도는 충남으로 22.3%의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도세수 증가효과가 가장 큰 시도는 전남으로 50.6%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세수증감효과

(단위: 백만원, %)

구분	지방세	시도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세수증감	개편후 지방세	개편후 시도세
서울	11,306,413	10,005,543	2,121,596	2,570,681	449,085	11,755,498	4.0
부산	2,579,279	2,338,363	458,177	793,420	335,243	2,914,522	13.0
대구	1,659,771	1,477,280	325,204	539,526	214,322	1,874,093	12.9
인천	1,945,257	1,729,574	400,706	550,105	149,398	2,094,655	7.7
광주	885,554	812,819	169,432	306,789	137,357	1,022,911	15.5
대전	1,080,507	984,588	211,193	317,368	106,175	1,186,682	9.8
울산	943,585	758,850	171,075	232,737	61,662	1,005,246	6.5
경기	10,720,678	6,463,548	2,306,208	2,306,208	-	10,720,678	-
강원	1,055,398	594,680	204,584	296,210	91,626	1,147,024	8.7
충북	1,041,159	540,058	193,737	285,631	91,894	1,133,053	8.8
충남	1,551,017	787,104	284,721	370,263	85,542	1,636,559	5.5
전북	915,356	433,287	155,551	359,684	204,132	1,119,489	22.3
전남	1,060,644	417,842	137,884	349,105	211,221	1,271,865	19.9
경북	1,798,727	811,081	279,991	539,526	259,535	2,058,262	14.4
경남	2,316,613	1,250,514	457,737	645,315	187,578	2,504,190	8.1
제주	433,744	254,397	71,726	116,368	44,643	478,387	10.3
합계	41,293,702	29,659,530	7,949,523	10,578,936	2,629,412	43,923,114	6.4

2. 지방세수구조 개선효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소비과세 비중이 높아지고, 재산과세 비중이 낮아지므로 지방세수구조도 개선된다. 현행 지방세수구조는 재산과세 : 소득과세 : 소비과세가 55.7% : 15.1% : 14.9%인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있다. 이러한 지방세수구조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34.3% : 14.1% : 38.1%의 소비과세와 재산과세가 중심이 되는 세수구조로 개편된다. 소비과세 비중의 향상은 지방세수 구조를 지역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의 증가가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로 개선시킨다.

〈표 7〉 지방세수 구조 변화

(단위: 백만원, %)

구분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기타	합계
개편 전	세수	22,995,972	6,214,769	6,149,384	5,933,577	41,293,702
	비중	55.7	15.1	14.9	14.4	100.0
개편 후	세수	15,046,449	6,214,769	16,728,320	5,933,577	43,923,115
	비중	34.3	14.1	38.1	13.5	100.0
	증감	-7,949,523	-	10,578,936	-	2,629,413
증감율		-34.5	-	172.0	-	6.4

3. 지방세수 불균형 완화효과

지방소비세 도입은 시도간 세수 불균형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 불균형 완화효과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지방세의 변이계수는 1.2540인데,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지방세의 변이계수는 1.1919로 낮아진다. 그리고 시도세의 변이계수는 1.3732에서 1.2872로 낮아진다.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이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방세수 불균형이 완화되는 이유는 지방소비세의 분포가 현행 등록세의 분포보다 시도간 세수 불균형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행 등록세수의 변이계수는 1.3261로 나타나지만, 지방소비세의 변이계수는 1.04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세수를 대상으로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현행 1인당 지방세의 변이계수는 0.1929인데,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변이계수는 0.1507로 낮아진다. 그리고 1인당 시도세의 변이계수는 0.3832에서 0.3195로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지방세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지방소비세 도입이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방세수 불균형이 완화되는 이유는 1인당 기준으로도 지방소비세의 분포가 현행 등록세의 분포보다 시도간 세수 불균형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행 1인당 등록세수의 변이계수는 0.2534로 나타나지만, 1인당 지방소비세수의 변이계수는 0.080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8〉 지방소비세의 불균형 완화 효과

구분		지방세	시도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총액 기준	도입 전	1.2540	1.3732	1.3261	1.0481
	도입 후	1.1919	1.2872	-	-
1인당 기준	도입 전	0.1929	0.3832	0.2534	0.0800
	도입 후	0.1507	0.3195	-	-

4. 지방세입구조 개선

지방세 증가,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 축소형태로 이루어진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세입구

조를 개선하는데, 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지방세입구조를 살펴보면, 2006년 결산 순계기준으로 지방세입 총액은 123조 9,752억 15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41조 2,937억 2백만원(33.3%), 세외수입이 30조 1,991억 22백만원(24.4%)로 자주재원비율은 57.7%이다. 그리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1조 7,346억 81백만원(17.5%), 국고보조금이 28조 9,509억 56백만원(23.4%)이다.

이러한 세입구조는 총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채, 지방세는 현행보다 2조 6,294억 12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수비중이 35.4%로 증가한다. 따라서 자주재원비율은 59.7%로 개선된다. 그리고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도 2조 6,294억 12백만원 감소한 26조 3,215억 49백만원이 되어 비중이 21.2%로 낮아진다.

〈표 9〉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세입구조 개선 효과

(단위: 백만원, %)

도입전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교부세	지방채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징수 교부금	지방세입
특별시	10,005,543	1,233,073	613,754	255,663	-	-609,223	-1,730,785	-272,410	9,495,615
자치구	1,300,870	2,275,748	409,848	121,220	-	609,223	1,730,785	272,410	6,720,104
광역시	8,101,475	2,587,401	2,442,856	1,314,242	566,486	-1,236,441	-1,736,683	-212,675	11,826,701
자치구	766,115	1,820,677	1,399,598	214,318	36,769	1,098,285	1,694,857	204,873	7,235,492
군	226,362	419,678	196,839	308,418	-	138,156	-41,786	7,802	1,339,041
도	11,731,859	3,875,547	13,881,033	4,406,764	652,497	-3,485,524	-2,815,198	-304,972	27,942,006
시	7,885,325	11,609,710	4,807,433	7,599,123	466,108	2,108,079	2,472,429	252,243	37,200,450
군	1,276,153	6,377,288	5,199,600	7,514,934	74,888	1,377,445	342,769	52,729	22,215,806
합계	41,293,702 (33.3)	30,199,122 (24.4)	28,950,961 (23.4)	21,734,682 (17.5)	1,796,748 (1.4)	-	-	-	123,975,215 (100.0)
도입후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교부세	지방채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징수 교부금	지방세입
특별시	10,454,628	1,233,073	164,669	255,663	-	-609,223	-1,730,785	-272,410	9,495,615
자치구	1,300,870	2,275,748	409,848	121,220	-	609,223	1,730,785	272,410	6,720,104
광역시	9,105,632	2,587,401	1,438,699	1,314,242	566,486	-1,236,441	-1,736,683	-212,675	11,826,701
자치구	766,115	1,820,677	1,399,598	214,318	36,769	1,098,285	1,694,857	204,873	7,235,492
군	226,362	419,678	196,839	308,418	-	138,156	-	7,802	1,339,041
도	12,908,029	3,875,547	12,704,863	4,406,764	652,497	-3,485,524	-2,815,198	-304,972	27,942,006
시	7,885,325	11,609,710	4,807,433	7,599,123	466,108	2,108,079	2,472,429	252,243	37,200,450
군	1,276,153	6,377,288	5,199,600	7,514,934	74,888	1,377,445	342,769	52,729	22,215,806
합계	43,923,114 (35.4)	30,199,122 (24.3)	26,321,549 (21.2)	21,734,682 (17.5)	1,796,748 (1.4)	-	-	-	123,975,215 (100.0)

이와같은 지방세입구조 개선효과를 자주재원비율의 변화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 본청의 자주재원비율은 각각 92.8%, 74.0%, 46.0%인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자주재원 비율은 각각 96.5%, 80.9%, 49.5%로 향상된다.

〈표 10〉 자주재원 비율 변화: 총계 기준

(단위: %)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도입전	92.8	74.0	46.0
도입후	96.5	80.9	49.5

5. 선결과제

이와같이 지방소비세 도입은 소비과세 비중을 높혀,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지방세수 불균형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고,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비율을 낮추어 이전재원 위주의 지방세입구조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러한 장점이 있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고 할 때, 우선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지방세원이 도입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양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부가가치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세인 등록세를 중앙으로 이양하는 세원교환과 또한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을 감소시켰다. 즉, 중앙과 지방간의 총 재원규모는 불변인 재원중립을 전제로 하여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서는 전문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세수 안정성이 높고 신장성이 좋으며은 조세저항적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점에서 중앙정부의 대승적 관점에서 양보가 필요하다. 또한 등록세의 국세화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세제의 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기초는 보유과세 강화, 거래과세 완화인데,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수단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지만,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지방세이므로 부동산 정책과세 기능강화를 위해서 거래과세인 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율결정권이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등록세는 탄력세율이 허용되어 시도지사에게 일정 범위의 과세자주권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은 과세자주권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등록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고, 최근의 등록세율 인하도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의미에서 보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과세자주권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은 중앙정부과 광역자치단체간의 세원 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지방간 재원 중립을 위하여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의 축소가 수반된다. 국고보조금의 축소는 전체적인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국고보조금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지방비 부담비율의 상향 조정은 지방의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감소시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다. 어느 정도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사업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원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고 이에 상응하도록 지방세인 등록세를 중앙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어느 시도도 지방세수의 감소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세보다 지방소비세 규모를 크게 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국고보조금을 감소시키도록 하였다. 이렇게 중앙·지방간 재원 중립을 유지하여 중앙과 지방의 어느 곳도 총 재원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방세제·재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제시하면서, 도입시 지방재정 과급효과를 지방세수 구조, 지방세수 불균형, 지방세입구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소비세 도입은 시도의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소비과세 비중을 높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지방세수 불균형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지방세수비중이 높아지고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의 비중을 낮추어 지방세입구조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려면, 중앙정부의 안정성, 신장성이 높고 조세저항이 낮은 양질의 세원인 부가가치세원을 양보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도도 부분적인 세율결정권이 있는 등록세를 지방소비세로 교환함에 따른 과세자주권의 약화를 감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이 과다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 김대영, 「지방세체계의 합리적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5-12, 1996.
- _____,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03-08(제359권), 2003.
- _____,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 김정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 박정수,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 유태현·한재명, 「지방소비세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7.
- 천명철, “지방소비세제 확충방안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단체 소득·소비세원 확충방안 토론회」,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6.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
- _____, 「지방세정 연감」, 각년도
- _____, 「지방재정 연감」, 각년도
- 府税のしおり, 大阪府, 2000.
- 地方財務協會, 「地方財政概要」, 2000.